



고용노동부

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

수신 관내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
(경유)

제목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확인 요청

1. 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 및 제18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업종(산안법 시행령 별표3, 별표5)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·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3. 그러나, 귀 사업장은 안전(보건)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에도 안전(보건)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오니 **2026. 9. 30.(수)까지 안전(보건)관리자를 선임**하고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에 **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보고**를 하시기 바랍니다.
 - * 안전(보건)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, 증빙서류(임금대장,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 등) 제출
4. 만일, 위 기일까지 안전(보건)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* 안전(보건)관리자 미선임 시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붙임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양식 1부. 끝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



근로감독관

오현정

산재예방감독 전결 2026. 8. 26.

과 과장

권영모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감독과-3885

(2026. 8. 26.)

접수

우 42723

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495, 2층 201호 산재예방감독과 (월성
동 1800 더 하이브)

/ <http://www.moel.go.kr/daegu>

전화번호 053-605-9169

팩스번호 053-588-0132

/ hzn9007@korea.kr

/ 비공개(7)